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793

발의연월일: 2021. 7. 28.

발 의 자 : 추경호 · 윤두현 · 허은아

권명호 · 김정재 · 윤희숙

정운천・이 영・박 진

이채익 · 김미애 · 임이자

송석준 · 김석기 · 이헌승

이명수 • 양금희 • 최형두

전주혜 · 강민국 · 김영식

의원(21인)

제안이유

현행 법률에 따르면 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을 하였을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 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심사로 인해 법안심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지난 2021년 7월 23일 있었던 여야 합의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 주어진 체계·자구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체계·자구 심사 권한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합리적인 의사진행을 통한 효율적 국회운영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법제사법위원회가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이유 없이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소관 위원회 위원장이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는 기 간을 현행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함(안 제86조제3항).
- 나. 법제사법위원회는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체계와 자구의 심사 범위를 벗어나 심사해서는 안 됨을 명확히 함(안 제86조제5항).

법률 제 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제3항 본문 중 "120일 이내에"를 "60일 이내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제사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체계와 자구의 심사 범위를 벗어나 심사해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86조(체계·자구의 심사) ① • 제86조(체계·자구의 심사) ①·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법제사법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이유 없이 회부된 날부터 120 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 이내에-----하였을 때에는 심사대상 법률 안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간 사와 협의하여 이의가 없는 경 우에는 의장에게 그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 한다. 다만, 이의가 있는 경우 에는 그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 여부를 무기명투표 로 표결하되, 해당 위원회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다.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법제사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체계와 자구의 심사 범위를 벗 어나 심사해서는 아니 된다.